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성 폭 력 방 지 및 피 해 자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에 시행령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 절차를
법률에 정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
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
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
896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
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
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2항) 및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u>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u> 1. <u>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하고,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u>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u>≤삭제></u>

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전학·편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① -----

----- 법 제7조제1항-----

-----.

② 법 제7조제1항-----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395